

상원 법안 43호란 무엇입니까?

상원 법안 43호(Senate Bill 43, SB 43)는 2023년에 통과되어 서명된 법으로,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의 후견인 제도 법률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본 법안은 행동 건강 문제가 있는 이들의 비자발적 구금과 치료 및 후견인 제도를 다루는 랜터먼-페트리스-쇼트법(LPS)의 권한을 확장합니다.

'심각한 장애'의 정의를 확장하는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제 심각한 장애에는 정신 건강 장애 또는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가 있거나 정신 건강 장애 및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가 동시에 발병한 상태로, 음식, 의복, 주거, 개인 안전, 필요한 의료 서비스 등의 기본적 필요를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이 포함됩니다.

SB 43은 후견인 제도 절차에 제출될 수 있는 증언의 범위를 확장하고, 카운티가 후견인 제도 조사를 수행할 때 덜 제한적인 대안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며, 주 정부의 보고 요건도 확장합니다.

랜터먼-페트리스-쇼트법(LPS)이란 무엇입니까?

랜터먼-페트리스-쇼트법(LPS)은 1967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법률로, 행동 건강 문제가 있는 이들의 비자발적 구금과 치료 및 후견인 제도를 다루는 법입니다. 이 법은 지정된 시설에서의 비자발적인 단기 구금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임시 및 영구 후견인 제도로 가는 길의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심각한 장애의 기준 및 예시

새롭게 정의된 '심각한 장애'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정신 건강 장애 또는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가 있거나 정신 건강 장애 및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가 동시에 발병함으로 인해 음식, 의복, 주거, 개인 안전, 필요한 의료 서비스 등의 기본적 필요를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이어야만 합니다.

포함되는 예시:

- 개인 안전: 비자발적 구금 없이는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없는 상태:
 - 위험한 교통 상황에 자신을 놓아둠
 -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임박한 위협에 처한 개인
 -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판단 장애

-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정신 건강 및/또는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로 인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기존의 신체적 질병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자발적 구금이 필요한 경우:
 - 산전 건강 관리, 후속 치료, 노숙, 약물 남용 등을 방치하고 있고, 정신 질환 및/또는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가 있으며 심각한 장애 상태의 임신한 여성, 피해를 입고 태아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당한 정도의 영양 실조(체중 감소 또는 탈수)의 징후
 -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지 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처 치료 및 감염 문제

5150 구금이란 무엇입니까?

5150 구금이란 자해 또는 타인 상해의 위험이 있거나 심각한 장애 상태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72시간 동안 정신과적 비자발적 구금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5150은 형사상 체포가 아닙니다.

5150 구금은 경찰관이나 보안관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신건강국(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에서 승인하고 LPS 법의 권한을 부여받아 집행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금 대상자는 억류되고 정신 건강 및/또는 약물 사용 장애 평가를 위한 시설로 이송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설에는 비자발적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의학적 치료를 진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전체 72시간 동안 구금 대상자의 입원은 필수가 아닙니다.

보호 대상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간주되거나 72시간이 종료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풀러남, 또는
-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자발적 환자로 입원, 또는
- 다른 유형의 구금 요건으로 비자발적 구금 유지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엇이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SB 43에 따라, 임상적 환경에서 임상가는 약물 사용 장애의 심각도를 진단하기 위해 정신 건강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TR)을 사용합니다.

DSM-5-TR에는 약물 사용 장애로 야기될 수 있는 11개 기준이 사용됩니다.

-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 6개 이상의 기준 증상을 보이는 자
- 중등도 약물 사용 장애: 4~5개의 기준 증상을 보이는 자
- 가벼운 약물 사용 장애: 2~3개의 기준 증상을 보이는 자

기준:

1. 의도된 용량과 기간보다 더 많은 용량이나 더 장기간에 걸친 사용
2. 용량 줄이기 또는 복용 중단 노력의 실패
3. 약물 효과 획득, 사용, 취함, 회복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용
4. 약물 사용에 대한 갈망 또는 강력한 욕구/충동
5. 대부분의 의무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6. 사회적/대인 관계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
7. 활동/취미의 감소 또는 포기
8.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
9. 약물 사용으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용
10. 내성
11. 금단 증세

LPS 법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집행관은 현장에서 관찰을 통해 새롭게 확장된 기준에 따라 개인의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 여부와 5150 구금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LPS 법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어 5150 구금을 집행하는 사람은 임상적 진단을 내리지 않으며, 위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라 수행한 자신의 관찰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만으로 발생한 심각한 장애에 대해 72시간 이후에도 집중 치료를 위해 대상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시설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본래의 72시간 구금이 종료된 후, 보호 대상자에게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한 비자발적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및/또는 보완적 서비스로서의 약물 의존 회복 서비스, 또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급성 정신의학 병원 및/또는 보완적 서비스로서의 약물 의존 회복 서비스 중 하나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정신 건강 및/또는 약물 사용 치료가 당장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LA 카운티의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서비스 상담 전화(Help Line for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Services), (800) 854-7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UDhelpLA.org의 온라인 제공자 디렉터리에서도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약물 사용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B 43 관련 용어 설명 및 가능한 지표와 증상 목록을 보려면 LACDMH 웹사이트 dmh.lacounty.gov/sb43을 방문하시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